

##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 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를 신청 중인 분

-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 : 통상 3개월간 유효하지만, 현재는 특례로 인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작성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작성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 ※ 더불어, 지난 번의 신청 내용에서 변경이 없이, 2023년 1월 31일까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①교부가 끝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및 ②초청기관 등이 작성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새로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상세한 사항은 [이쪽](#)을 확인 해 주세요.
- 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를 신청 중인 분에 대하여 : 현재 신청 중인 안건에 대해 활동개시시기를 변경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초청기관에서 작성한 사유서만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 2 재류 관련 심사 중 재입국허가로 출국하신 분

**【중요】 본 방침은 2022년 10월 11일 이후에 신청된 안건은 대상외입니다.**

재입국허가(간이재입국허가를 포함)로 출국 중인 분이 출국 전에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재류기간갱신허가 신청 또는 영주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재입국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친인척 또는 초청기관의 직원 등이 해당 신청의 허가와 관련된 재류카드의 대리수령을 인정하며 출국 중인 분이 재입국허가에 의한 입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재입국허가로 출국 중에 재입국허가기한이 만료된 분 등

**【중요】 본 방침은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 대상이 아닌 분 ( 영주자 등 ) : 체재하고 계신 곳의 재외공관에서 비자신청을 해 주세요  
※<영주자>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주자(고시외)> 및 <특정활동(고시외)>의 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 대상자 ( 유학생, 기능실습생,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 : 일본에 중장기 재류자(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 등)로 재류하고 있던 분이 재입국허가에 의한 출국 중에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류기한이 만료된 경우 등으로, 새롭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 및 초청기관이 작성한 사유서만을 가지고 심사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③ <고급전문직2호> 로 재류하고 있던 분 : ②에 따라 <고급전문직1호>로 종전의 활동에 상응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 주세요.(<고급전문직 1호> 의 비자발급을 받지만, 입국시에 일본의 공항에서 <고급전문직2호>로 새롭게 입국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